총회 의전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예의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(이하 '총회'라 한다)의 격식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합이다.

제2조 (의전 대상)

총회의 의전 대상은 내부인사에 대한 의전 및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으로 구분한다.

- 1. 내부인사에 대한 의전은 총회장, 증경총회장, 증경부총회장(장로) 및 총회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인사로 한다(단, 총회 산하 기관장은 내빈에 속하지 아니한다.).
- 2. 외부인시는 총회가 특별히 초청한 협력 교단 총회장 및 대표자, 국제협력 교단 총 회장 및 대표자, 총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인사로 한다.

제3조 (세부지침)

- 1. 총회장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필요한 사무도구(집기 및 전화)를 설치할 수 있고 명패는 [총회정]으로 한다.
 - 1) 총회장의 평시 집무를 위해 전임 사무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. 단, 인선은 본부 직원으로 한다.
 - 2) 총회 기간 중 총회 장소에 총회장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.
- 2. 총회 회집 시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의 좌석은 회의장에 별도로 배치하며, 좌석배열을 총회장 재임 순으로 하고, 패찰로 표시한다.
 - 1)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에게는 패찰을 해 드리고 좌석에 안내원 1인을 배치한다.
- 3. 외부 초청인시의 좌석은 회의장 좌우 상단으로 하고 국내 인사와 국제협력선교 관계에 있는 인사로 구분한다. 좌석 배열은 국내 인사일 경우 가나다 순으로, 국 제협력선교 관계 인사일 경우 알파벳 순으로 한다.
 - 1) 외부 초청인사에게는 안내원 1인을 배치한다. 단, 외국인은 통역인을 배치할 수 있다.

372 / 총회제반규칙집

제4조 (내빈 소개)

- 1. 총회장은 정한 시간에 내빈 인사 소개를 하되, 필요할 경우 회의 중간에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.
- 2. 내빈 인사 소개 시 특별한 경우 총회장은 회원들에게 기립 박수토록 할 수 있다.
- 3. 내외빈 인사 중 증경총회장, 해 교단 총회장, 총회장에 준하는 공식 초청인시는 총회장이, 그 외의 인사는 총무가 소개한다.
- 4. 총회장은 필요한 경우 내빈에게 특별 인사말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케 해야 한다.

제5조 (내빈 접대)

- 1. 내빈 접대는 정중하게 하되, 검소하게 해야 한다.
- 2. 총회가 필요하여 특별히 초청한 인사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여비 및 체재비를 지불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총회 여비규정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.

제6조 (개정)

이 규정은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를 준용한다.

1995년 9월 제80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